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28호
2024. 5. 10.(금)

차 례

고 시(2)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고시 제2024-46호) 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부여 고시(고시 제2024-57호) 3

공 고(5)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4년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4-533호) 4
- 도시계획시설사업(신탄진휴게소 화장실 증축공사) 공사완료 공고(공고 제2024-542호) 8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546호) 9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549호) 12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550호) 15

입 법 예 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538호)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553호) 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554호) 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555호) 50

행 정 예 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공고 제2024-534호) 57

공 략									
----------	--	--	--	--	--	--	--	--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도로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건설과 ☎042-608-52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26-16번지 일원 등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읍내6호선)
- 2) 명칭: 회덕향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도로명	사업내용	위치		비고
			시점	종점	
도로	소로1-읍내6호선	도로개설 L=150m, B=10.0m	대로 1-7호선	소로 2-읍내5호 선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대덕구청장
- 2)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붙임참고

사.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

○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사업명: 회덕향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소계				20,747	1,045						
1	대전 대덕구 읍내동	258-17	답	459	235	대 덕 구	-			-	
2		532	철	12,278	612	국 (국토교통부)	-			-	
3		526-16	구	6,928	155	국 (농림축산식품부)	-			-	
4		534-4	대	32	20	임○민 외 1인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로 101번길 60			-	
5		534	철	1,050	23	국 (국토교통부)	-			-	

※ 상기 편입 면적은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위 토지는 지
장물건 포함임.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변경·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변경· 부여사유	도로명 변경·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오정동 72-6	오정로120번길 35 → 오정로120 번길 33	건물군 생성	임대차계약시 혼동	2024. 5. 10.
신일동 36-6	산업단지로93번길 18	건물신축	산업단지로의 시작지점부터 약 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2024. 5. 10.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4)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533호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4년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대덕구에서 시행 중인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노후점포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점포운영과 함께 상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 사업위치: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붙임1]
- 사업기간: 2024. 5. ~ 2024. 12. 31.
- 지원규모: 각 상가당 최대 500만원 (20개소 이내)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상가건물 소유주(임대인)
*대상범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단, 아파트 내 상가제외) [붙임2]
- 지원내용: 건물 외부 개선 및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 리모델링 지원

3. 신청조건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건물 소유주(임대인)
 - 아파트 지원 불가
 - 무허가·불법 건축물 지원 불가
 - 임차인 전원 동의 및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필수

※ 임차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상생협약 위반 시 보조금 반환 조치
 ☞ 상가점포 소유주(임대인): 5년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

- 대전광역시 추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불가

4. 지원금액

○ 리모델링 총 비용의 10%지원(각 상가당 최대 500만원)

$$\text{총 사업비} = \text{보조금}(10\%) + \text{자부담}(90\%) = \text{설계비} + \text{시설공사비}$$

○ (예시)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액

구 분	상가 리모델링	비 율
총 사업비	5,000만원	100%
보 조 금	500만원	10%
자 부 담	4,500만원	90%

- 최대 지원금 초과될 시 초과된 전액은 자부담해야 하며, 최대 지원금 미만 책정되었을 경우 그 총사업비는 보조금(10%) + 자부담(90%)로 산정.

[최대지원금] 총사업비 5,000만원 = 500만원(보조금) + 4,500만원(자부담)

[최대지원금 초과] 총사업비 6,000만원 = 500만원(보조금) + 5,500만원(자부담)

[최대지원금 미만] 총사업비 4,000만원 = 400만원(보조금) + 3,600만원(자부담)

5. 공사범위

○ 상가 외관 개선 및 내구성,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

건물	지붕	<input type="checkbox"/> 보수	<input type="checkbox"/> 방수	<input type="checkbox"/> 우수배관	
	외벽	<input type="checkbox"/> 도장	<input type="checkbox"/> 보수	<input type="checkbox"/> 외부단열	
	창호	<input type="checkbox"/> 교체	<input type="checkbox"/> 보수		
	옥상	<input type="checkbox"/> 보수	<input type="checkbox"/> 방수		
외부	담장	<input type="checkbox"/> 철거	<input type="checkbox"/> 보수	<input type="checkbox"/> 재설치	<input type="checkbox"/> 높이 감소
	대문	<input type="checkbox"/> 철거	<input type="checkbox"/> 보수	<input type="checkbox"/> 재설치	
공간	조경	<input type="checkbox"/> 보수	<input type="checkbox"/> 재설치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담장,대문철거 가점(담장,대문 철거시)

6.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5. 10.(금) ~ 5. 24.(금) 18:00까지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 처: 대덕구청 별관 4층 도시계획과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별관 4층 도시계획과(오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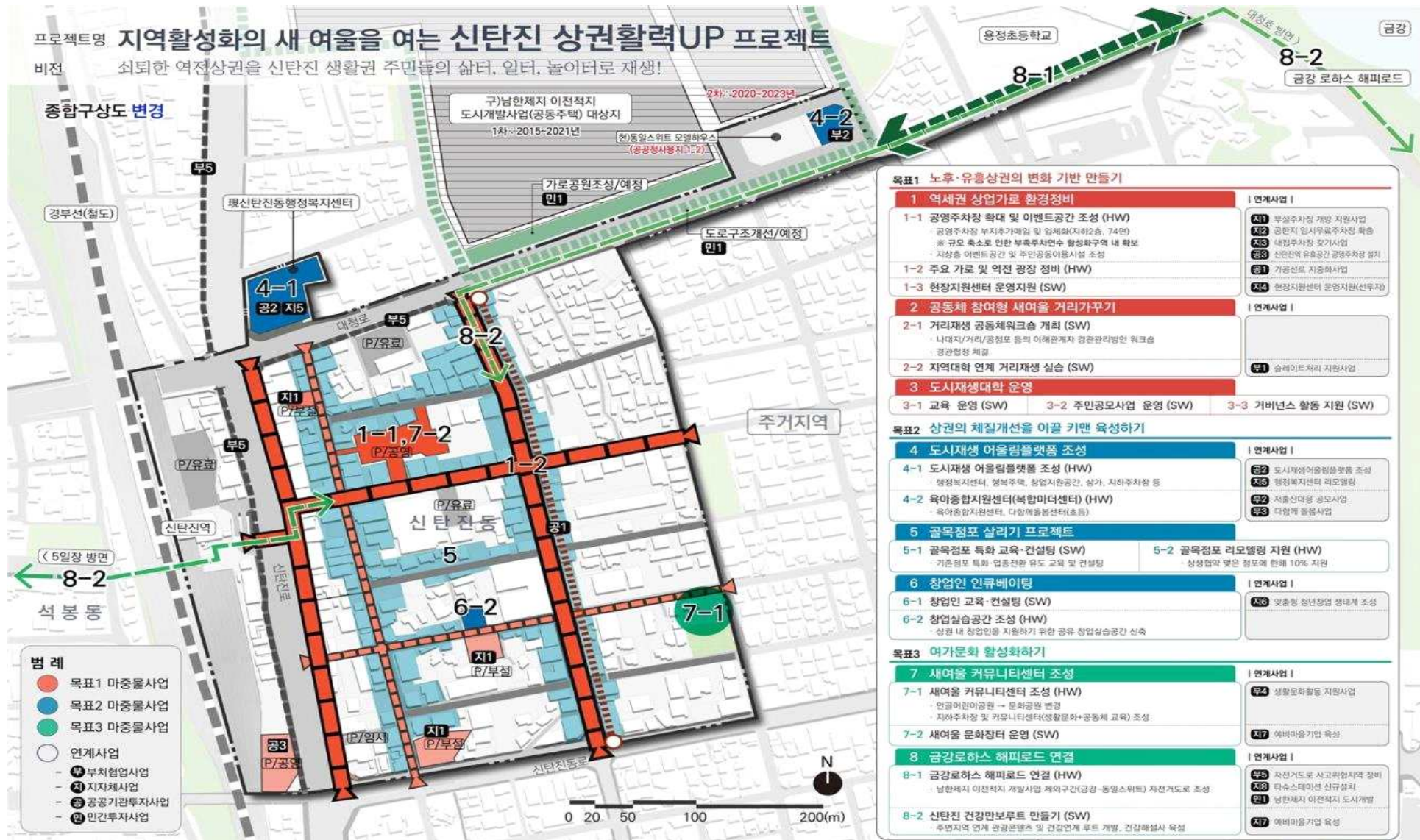
7.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후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골목점포 특화 교육·컨설팅 수료자 우선 선발
- 심의회결과 부적격 또는 후순위자의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8. 구비서류 및 문의처

- 사업절차별 제출서류 [붙임3]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042-608-5942, FAX. 042-608-3841)

붙임1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구역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5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신탄진휴게소 화장실 증축공사) 공사완료 공고

1.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대덕구 상서동 236-1번지 일원 화장실 증축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신탄진휴게소 화장실 증축공사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3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사업
- 명칭: 신탄진휴게소 화장실 증축공사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내용: 화장실 증축
- 규모: 화물휴게소 본동 증축 A=53.76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마. 사업 시행기간: 2023. 8. 11. ~ 2024. 5. 3.(공사완료일 2024. 4. 17.)

바. 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54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5. 10. ~ 5. 31. (21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5. 31.(금)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조*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 86, ***호(덕암동, 금호주택)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김*식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328, 903동 ****호(배곧동, 호반베르디움 더프라임)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손*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36번길 36, *층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봉투이용 투기)	200,000	폐문부재
이*용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132번길 10, 102동 ***호(내동, LH논산내동1단지)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549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5. 10. ~ 5. 31. (21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박*미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1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정*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06번길 5-12,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차량 이용)	500,000	폐문부재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550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24. (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시골야채반찬 (임○남) / 대덕구 중리북로37번길 50, 1층 (중리동)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시골야채반찬 (사업자등록 폐업일 2015. 5. 1.)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24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 - 6964.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의회사무과 정원의 직렬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전문적 업무추진 기반 마련 및 재난안전 분야 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관별 정원의 직렬을 조정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816명(변동 없음)

나. 일반직 직렬 조정 내역

○ 본청

- 6급 : 141명(변동 없음)

▶ 시설 : 11명 → 10명(감 1명)

▶ 행정·시설 : 14명 → 15명(증 1명)

- 8급 : 137명(변동 없음)
 - ▶ 행정·시설 : 6명 → 5명(감 1명)
 - ▶ 행정·시설·방재안전 : 0명 → 1명(증 1명)
- 9급 : 55명(변동 없음)
 - ▶ 시설 : 14명 → 13명(감 1명)
 - ▶ 시설·방재안전 : 0명 → 1명(증 1명)

○ 의회사무과

- 6급 : 5명(변동 없음)
 - ▶ 행정 : 5명 → 4명(감 1명)
 - ▶ 행정·시설 : 0명 → 1명(증 1명)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dmsdud@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변은영(전화 :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평생학습관 신규 설치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시설 사용료·수강료 징수 기준 및 반환·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생학습관 운영의 제반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법」 개정(2023. 4. 18. 개정, 2024. 4. 19. 시행)으로 평생학습관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비하고, 신규 설치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안 제17조).
- 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반환·감면 기준을 신설하고, 교육강좌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강료 기준을 정비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다.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평생학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전화 : 042-608-6495, FAX : 042-608-3860, E-mail : hoya042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과 담당자 정임호(전화 : 042-608-64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대덕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동)에 둔다.

제20조의 제목 “(수강료 징수)”를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강료는 별표 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의 제목 “(수강료 반환)”을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료”를 “수강료 및 사용료”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수강료 감면)”을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
4.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제20조관련)

구 분	기 준	금액(원)	비 고
1.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다목적홀	평일 주간 1회 2시간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음악연습실	“	10,000	
동아리실	“	10,000	
다목적홀 냉난방시설	1회	40,000	
무대·조명장치	1회	20,000	
2. 평생학습관 수강료			
· 교육생수강료	1인 1월	3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료는 경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수강시간 및 인원 등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수강료 납부대상 강좌는 선납으로 하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3. 배달강좌 수강료			
· 교육생수강료	1팀당	50,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료는 경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수강시간 및 인원 등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수강료 납부대상 강좌는 선납으로 하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제21조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① 시설 운영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한 경우

구 분	반환액 및 배상액	비 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②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한 경우

구 분	반환액 및 배상액	비 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입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	납입된 사용료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2.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환급
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			전액환급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개시 전	전액환급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개시 전	전액환급
		강의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22조 관련)

1. 평생학습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수강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6)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감면
※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 청장은 <u>법 제21조제2항</u>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u>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관</u> (이하 “<u>평생학습관</u>”이라 한다) <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②·③ (생 략)</p>	<p>제17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 ---- <u>법 제21조제1항</u>----- ----- ----- <u>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평생 학습관의 명칭은 대덕구 평생학 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 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 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 동)에 둔다.</u></p> <p>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20조(수강료 징수) ①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며 <u>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u></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p> <p>① ----- ----- <u>별표 1</u>-----.</p> <p>② <u>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부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21조(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u>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u></p>	<p>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 ----- --- <u>수강료 및 사용료</u>-----</p>

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 3. (생략)

제22조(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별표 3에 따라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상·하반기별 두 과목으로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신 설>

제23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
4.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시행일: 2024. 4. 19.] 제21조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평생학습관의 신규 설치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수강신청과 사용신청, 수수료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평생학습관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평생학습관의 교육 수강 신청 및 시설 사용 신청에 관한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다. 교육수료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수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별지 제6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5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평생 학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전화 : 042-608-6495, FAX : 042-608-3860, E-mail : hoya042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과 담당자 정임호(전화 : 042-608-64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휴관)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매주 토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강신청등) ①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 안에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취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발급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등)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 또는 사용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취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수료증)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덕구 평생학습관」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대덕구 평생학습관」 등 교육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e-mail)	2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사 용 자	성명(단체)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목적	목 적		참석인원	명
및 내용	행사내용		승인 여부	가 / 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까지 (일)			
구 분	시 설 명	기본요금	추가금액	계
사용시설				
부대시설				
총 사용료	원		감면 후 사용료 (실 납부액)	원
감면 사유			첨부(증빙)서류	
<p>「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대 덕 구 청 장 귀하</p>				

접수번호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	성명(단체)		연 락 처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 용 료	원 (실 납부액)			
<p>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변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대 덕 구 청 장</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덕구 평생학습관」은 시설대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대덕구 평생학습관」 시설대관을 위한 행정업무처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5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덕구 평생학습관 시설대관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접수번호	시 설 사 용 취 소(반환) 신 청 서			
호				
사 용 시설명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 ~ 시			
사 용 신청자	성 명 (단체명)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취소사유				
사용료 반환	예 금 주		반환금액	원
	지급계좌		은행명	
<p>「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취소(반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대 덕 구 청 장 귀 하</p>				

접수번호	시설사용취소(반환) 신청서 접수증			
사용 시설명			사용일시	
사용신청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금액		접수일		접수번호
<p>위와 같이 대덕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취소(반환)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대 덕 구 청 장</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덕구 평생학습관」은 시설대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대덕구 평생학습관」 시설대관을 위한 행정업무처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5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덕구 평생학습관 시설대관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사 용 대 장

접 수		신 청 자			사용일자	행 사 명 및 사용목적	입장 인원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결 재		
번호	일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6호서식]

대덕구 평생학습관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교육과정명 : 과정

교육 기간 : 년 월 일 ~ 월 일(시간)

위 사람은 대덕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상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 덕 구 청 장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으로 명시된 “1 ~ 3급 장애인”을 장애 정도의 표현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모호한 표현을 명

확하게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생활지원과
(전화 : 042-608-6766, FAX : 042-608-3838, E-mail : rudsus9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지원과 담당자 김경년(전화 : 042-608-67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표 (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배 점	비 고
총 계		100	
1. 가구원수 (20점)	3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여야 함.
	2인	15	
	1인	10	
2. 가구주 연 령 (20점)	65세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60세 이상~65세 미만	18	
	55세 이상~60세 미만	16	
	50세 이상~55세 미만	14	
	50세 미만	12	
3. 대덕구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대덕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7년 이상~10년 미만	18	
	5년 이상~7년 미만	16	
	2년 이상~5년 미만	14	
	6개월 이상~2년 미만	12	
4. 가구원 형 태 (20점)	유형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독거노인 ② 장애인 : 수급지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자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⑤ 국가유공자
	유형 2	15	
	유형 1	10	
5. 기 타 (20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세입자, 재해이주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 (제5조제1항 관련)

연 번						
입 주	성 명	신청자1 (가구주)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2			장애인(장애수당)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자1 (가구주)		구 분	저소득 독거노인	
		신청자2			저소득 국가유공자	
주 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전화번호						
가구원수			대덕구 계속 거주기간	년 월(~)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		배점	확인내 용	득점	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	
총 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세이상 독거노인()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 국가유공자() 	
가구원수 (20점)	3인 가구	20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인 가구	15				
	1인 가구	10				
가구주 연 령 (20점)	65세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세입자 () • 재해이주민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조사자 	
	60세 이상~65세 미만	18				
	55세 이상~60세 미만	16				
	50세 이상~55세 미만	14				
대덕구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			직(급) : 성 명 : (인)	
	7년 이상~10년 미만	18				
	5년 이상~7년 미만	16				
	2년 이상~5년 미만	14				
가구원 형 태 (20점)	유형 3	20			담 당 자	동 장
	유형 2	15				
	유형 1	10				
기 타 (20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0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제9조제3항 관련)

임대주택 _____ 호

계약자 (세대 주)	성 명					보호구분 (해당에 ○표)	
	생년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장애수당) () • 저소득 독거노인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한부모가족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직 업						
	학력(학교명)						
	전화 번호	주택					
휴대 전화							
가족 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학교명)	월 소득	장애 또는 질병	
특이 사항							
구성원 (사진)				구성원 (사진)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2-22번지 앞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2-22번지 앞 노상주차장 1면 폐지(사유 : 122-22번지 인접도로에 조성하는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추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예고대상

위 치	폐지면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22-22번지 앞 노상공영주차장 1면	1

4.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https://www.daedeok.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5. 10.(금) ~ 2024. 5. 30.(목) (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vlfwpdi@korea.kr)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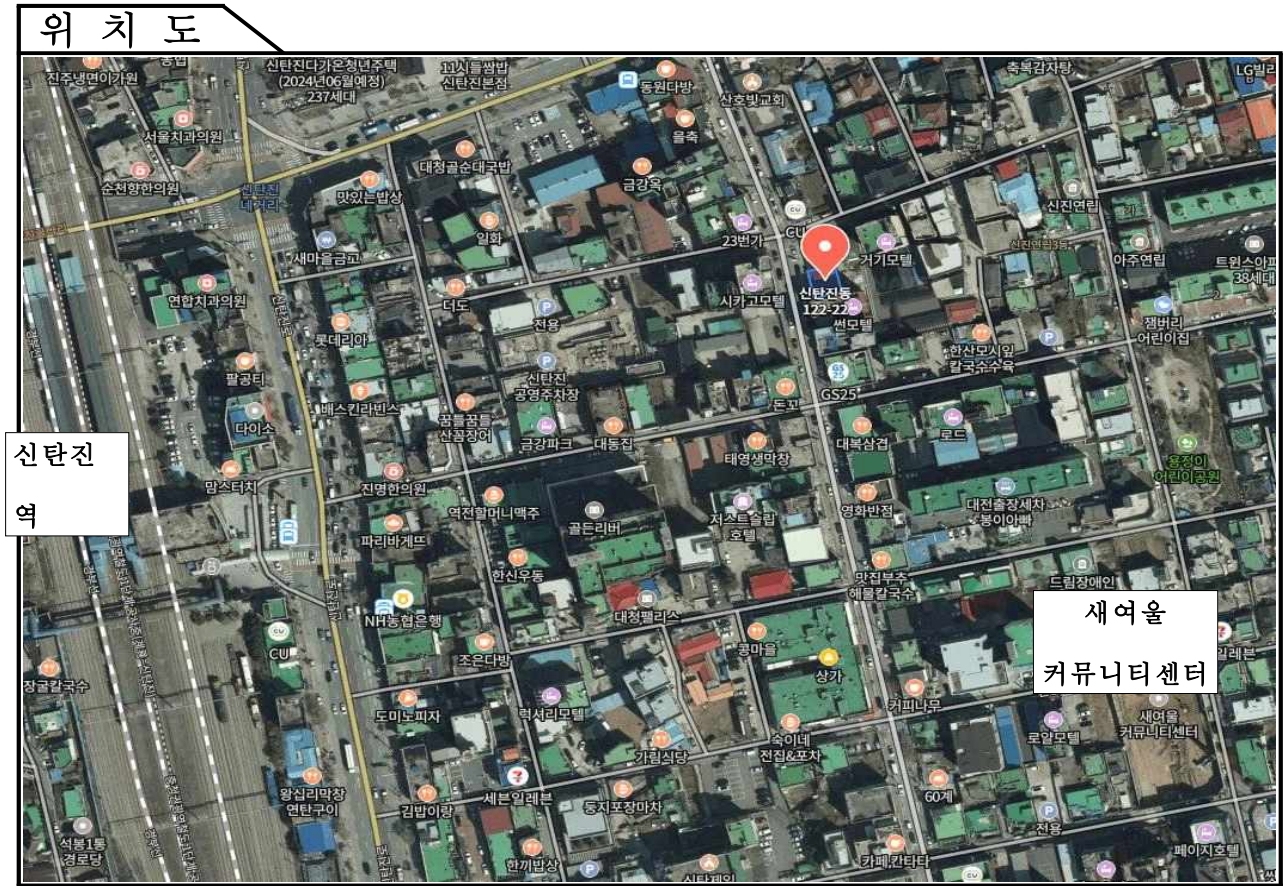
마. 제출기일: 2024. 5. 10.(금) ~ 2024. 5. 30.(목)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끝.